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	------

의안번호	제56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2022. 6. 16.)에 따라 이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상위 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스포츠클럽에 대한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2692(2023. 3. 15.)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복지정책과-9227(2023. 3. 20.)호]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2746(2023. 3. 7.)호]

제 출 자	경제문화국장
제출연월일	2023. 4. 11.

예산실장 심사필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3. 7. ~ 2023. 3. 27.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논산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을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센터를 사용할 경우

③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용료의 감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체 육 진 흥 과 장			김	일 규
	체 육 정 책 팀 장			정	재 룡
	담 당 자			이 도 영 (7 4 6 - 5 7 5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논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스포츠클럽법」 제3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클럽”이란 주 사무소가 충청남도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으며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논산시에 있고,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 ----- ----- ----- ----- ----- ②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제6조(지도·감독) ① ----- 제5조----- ----- ----- ----- ----- ----- ----- ② ~ ④ (생략)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지도·감독) ① ----- 제5조----- -----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제5조의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경우

② (생략)

제7조(환수) ① -----

1. -----
제5조-----
2. -----
--- 제6조-----

② (현행과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 없음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해당 없음

나. 추계결과

○ 해당 없음

3.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김 일 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 사용료의 100분의 100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 사용료의 100분의 80이하